

제323회 임시회

2013. 9. 4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현삼 의원 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개정(공포 '11.7.28, 시행 '12.7.29.)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·관리를 기하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(안 제1조, 제13조)

-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⇒ 「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설치 지원근거 마련 (안 제16조)

- 「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규정에 근거

다.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

(안 제4조, 제5조)

-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⇒ 환경정책위원회

라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리

- 야생동·식물 ⇒ 야생생물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설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가.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, 종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·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하였지만, 추가적으로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